

2022년

건설업



산재예방지원 사업 안내



목차 contents

건설업

산재예방지원 사업 안내

0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03
0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08
03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14
0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16
05 위험성평가 인정	18
06 직업건강분야 지원 사업	21
07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건강 진단 비용지원	26
08 계절별 기후변화 취약근로자 건강보호	29
09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30
10 패트롤 현장점검	31
11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32
12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33



0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착공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을 작성·검토하고 공사 중에 그 이행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와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7년 (기사는 5년) 이상인자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 전날까지 자체심사서(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

자체심사자 기준 (1인 이상 참여)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 실무경력 3년 이상 산업안전기사 포함)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다음의 일정규모 공사는 위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기준에 맞는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를 받고 공사 착공 전날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과 첨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공단의 심사로 갈음 가능

지도사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 및 확인 대상 <small>(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중 지상높이가 50m 이하인 아파트 건설공사 * 아파트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 가목]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중 깊이가 15m 이하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 및 확인이 가능한 지도사 기준 <small>(고용노동부 고시)</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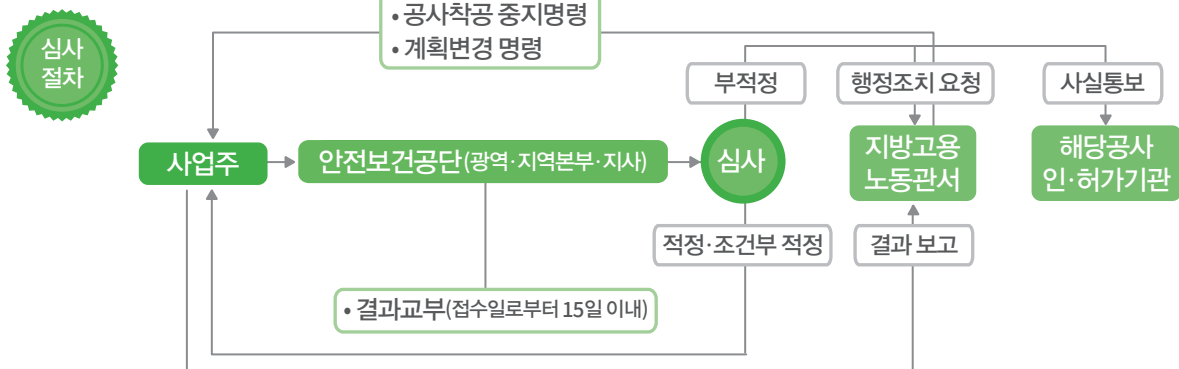
심사 및 절차

심사 공단은 동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과 통보

-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심사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 통보



확인 및 절차

확인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 실시**

• 확인사항

-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 부합 여부
- 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여부
- ③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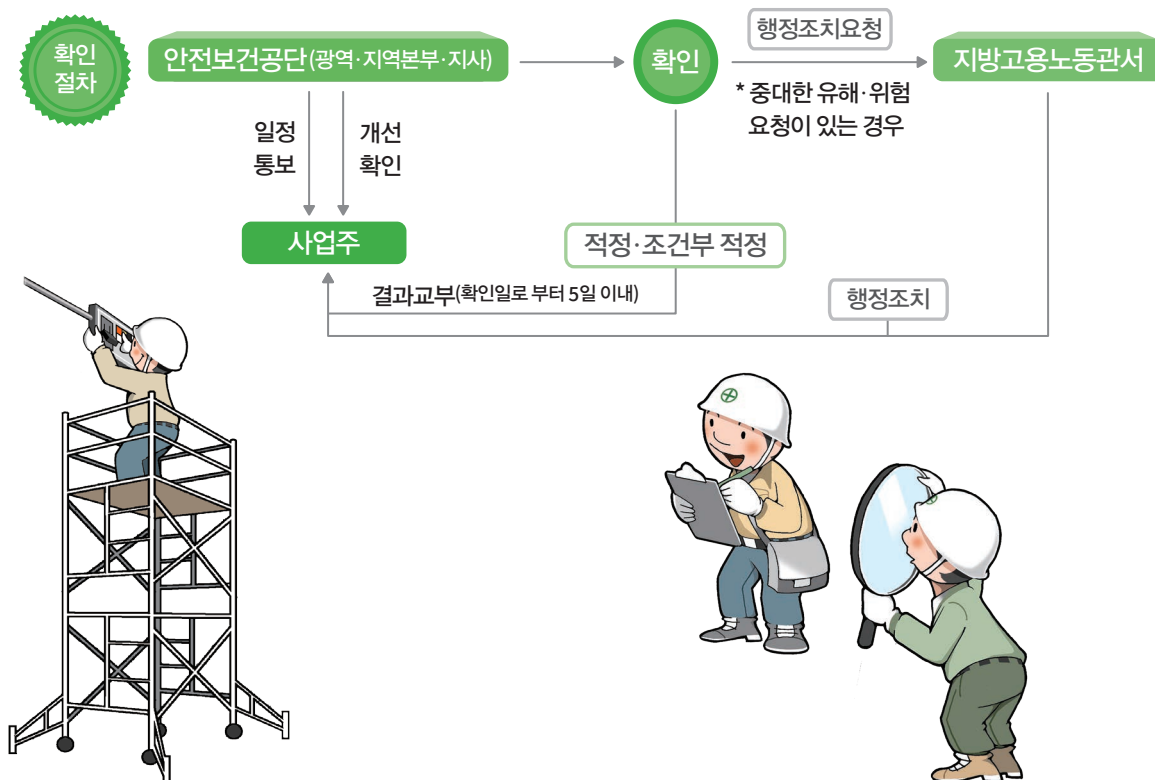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자체 확인 실시

• 공사 중 사망재해 발생 시 공단이 확인 실시

• 사망재해 중 다음 재해는 제외

- ①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 ② 방화, 폭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천재 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 제3자 과실, 진폐, 기타(야유회, 체육 행사, 취침, 휴식 등) 중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

지도사 평가결과서 제출로 공단의 심사를 갈음한 현장은 사업주가 지도사 평가결과서의 첨부서류인 세부 평가 내용에 기재한 확인 예정일까지 지도사 확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공단의 현장방문을 생략하고 대체 가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 서류

* 계획서 첨부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①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 서식)
- ②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 ③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 ④ 전체 공정표
-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별지 제102호 서식)
- ⑥ 안전관리 조직표
- ⑦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작업 공사 종류	첨부서류
건축물, 인공구조물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구조물공사 다. 마감공사 라. 기계 설비공사 마. 해체공사	가. 해당 작업공사 종류별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가. 가설공사 나. 단열공사 다. 기계 설비공사	작업개요 및 재해예방 계획
다리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다리하부(하부공) 공사 다. 다리상부(상부공) 공사	나. 위험물질의 종류별
터널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구조물 공사	사용량과 저장·보관 및
댐 건설 등의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댐 축조공사	사용시의 안전작업 계획
굴착 공사	가. 가설공사 나. 굴착 및 발파공사 다. 흙막이 지보공 공사	

심사 수수료

심사대상	심사대상		수수료 (원)
	종류	규모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 등"이라 한다) 공사	가.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 : 5개소 미만		44,000
	나.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 : 10개소 미만		58,000
	다. 대상건축물·공작물의 수 : 10개소 이상		67,000
2.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대상 교량 1개소		44,000
3. 터널건설 등의 공사	가. 길이 50m		44,000
	나. 길이 500m 미만		58,000
	다. 길이 500m 이상		67,000
4. 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대상 댐 1개소		58,000
5.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가. 굴착공사 5개소 미만		44,000
	나. 굴착공사 10개소 미만		58,000
	다. 굴착공사 10개소 이상		67,000

심사수수료 납부시기 등



- **납부시기**: 계획서 제출 후 입금계좌 통지시
- **납부은행**: 가상계좌 지정은행
- **입금자명**: 입금 건설회사명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계획서 내용 등	공사종류			
	대상공사			
	발주처			
	공사착공 예정일	공사도급 금액		
	공사개요	공사준공 예정일		
	본사 소재지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작성자	성명			
	작성자 주요경력			
계획서 검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검토자 주요경력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사업자 또는 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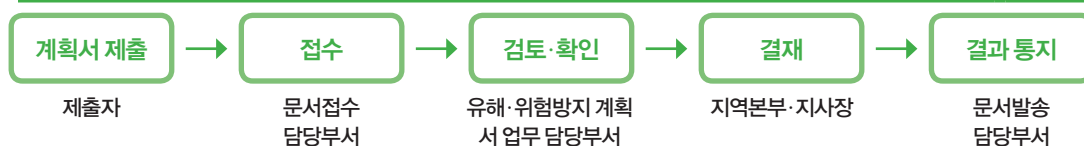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사)]



* 신청서 양식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계획서 작성시 첨부서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0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재이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의 목적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 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이며,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정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제13조의8

건설현장 의무적용

- 공사규모(금액)에 관계없이 전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2014년 12월 1일 이후)

교육 실시 기관

- '12. 1. 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관련사이트 「교육포털」 →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교육안내 → 교육기관 찾기
-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안내 → 교육기관 찾기
- APP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교육대상

-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총 교육시간		4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절차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근로자 수에 따른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

과태료 : 교육 미실시 근로자 수 × 위반 회차의 과태료*

* 1차(10만), 2차(20만), 3차 이상(5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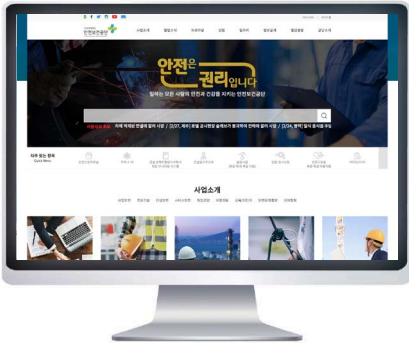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자 조회 및 발급(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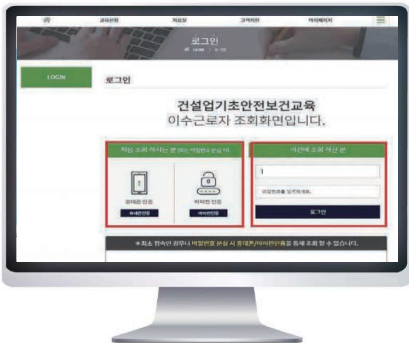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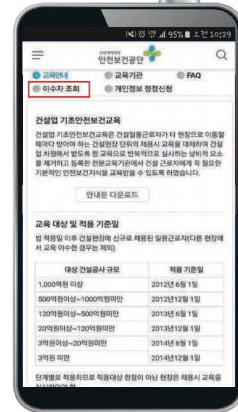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이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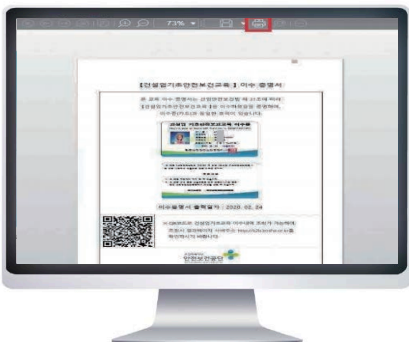
스마트폰 이용시



공단 홈페이지접속(<http://www.kosha.or.kr>)→
관련사이트「교육포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본인인증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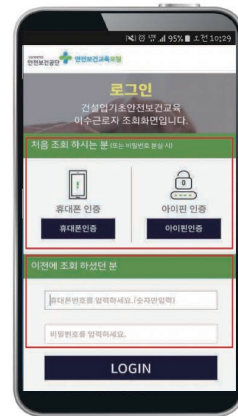
이수증 출력

안전보건공단(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실행
우측 하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조회”클릭

“이수자 조회”



이수증 확인



본인인증 로그인

이수증은 교육생 본인이 안전보건교육 포털(www.koshats.or.kr) 또는 「위기탈출 안전보건」APP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 받는 법

1. 구글 Play 스토어(Android), 앱스토어(ios) 접속
2. 접속 후 검색에서 「안전보건공단」을 입력하여 「위기탈출 안전보건」APP 다운로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Q 건설 일용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확정된 직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하여 일을 하도록 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도급인(원청업체)과 수급인(하청업체) 중 누구인가요?

-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Q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도급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급인(원청업체)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도급인(원청업체)은 수급인(하청업체)인 사업주가 교육실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교육장비를 제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등에 대한 협의 포함)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당해 교육장에서 이수증을 즉시 발급하고 해당 사항을 전산 등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지한 이수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수증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 근로자 조회 →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실·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09년~'11년(3년간) 중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도 현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09년~'11년도에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12. 6. 1일부터 시행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또는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는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 근로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수증(플라스틱 카드 형태)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교육 이수증에는 사진이 인쇄되므로 '09년~'11년도 교육이수자는 안전보건공단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12년 이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의 교육장이 120㎡ 가 되지 않을 경우 인근의 동사무소 및 구청 내에 교육장 및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방문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사업주 등(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적정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교육 인원을 1회 50명 이내에서 연면적 기준에 적절한 교육 인원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의 교육전용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 실시를 요청할 경우 위 기준을 지켜서 실시한다면 방문교육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 강의실 연면적에 따른 교육생 편성 기준

가 60㎡ 이상 : 20명 이내	나 80㎡ 이상 : 30명 이내	다 100㎡ 이상 : 40명 이내	라 120㎡ 이상 : 50명 이내
-----------------------------	-----------------------------	------------------------------	------------------------------

Q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정기교육이나 특별안전·보건교육, 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교육 중 일용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씩 실시하던 “채용 시의 교육”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기·특별·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등”은 기존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특별교육”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대상에 해당된다면 당해 업무에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현장의 안전기준이나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Q 이수증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수증은 교육생 본인이 안전보건교육 포털(www.koshats.or.kr) 또는 모바일APP(위기탈출 안전보건)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이수증에 인쇄된 QR코드 접속을 통해 이수증 조회와 진위여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건설현장 안전교육장에서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만약 된다면 구비하여야 할 것이 있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2제4호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전용의 강의실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교육생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 교육은 안전 및 보건강사가 전문 분야별로 각각 강의를 하여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품 및 방음·온도·조명 등의 적절한 교육환경을 확보하여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이 있나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현장 방문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 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1에서 정하는 인력기준 가항목 및 나항목의 인원 3명이 모두 있어야 하나요?

- 인력기준 가항목: 매 회차 공통부분 교육
- 인력기준 나항목: 주 1시간 이상 교육(가항목이 건설안전분야면 공통 및 건설안전분야 교육 가능)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2 ①항 5호]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안내 → 교육기관 찾기를 선택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과 교육기관별 교육계획,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서 추락(떨어짐)방지용 안전시설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의 일부 정액비용,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임차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65%, 현장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시행기간
연중 수시(재원 소진 시까지)

추락방지 안전시설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떨어짐)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기여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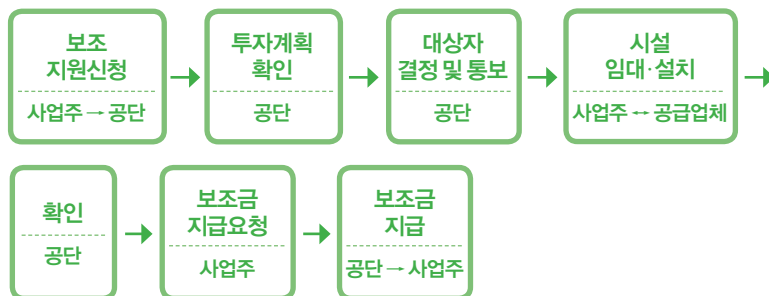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떨어짐) 방지용 안전시설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

보조 제외 대상

- 전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 사업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지원절차



지원설비

*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종류 및 규격

- 시스템비계*
 - 주요 구성항목: 수직·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 * 시스템비계
 - 건설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떨어짐(추락) 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
-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품목	규격 및 기준	사용 장소
낙하물방지망 (플라잉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다리: 폭30cm이상 × 길이2m 이상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현장 등
추락방호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 	철골조립, 공장 신축, 개·보수 현장 등
수직보호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 	외부 비계 외측에 설치
사다리형 작업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다리 상부에 작업발판이 부착된 제품 • 안전인증(S마크) 제품 • 작업발판 최대 높이 3.5m이하 제품 	고소작업대 비계 등의 어려운 장소

지원금액 및 조건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까지 지원 가능(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2개소를 1개소로 산정, 3억 미만의 경우 3개소를 1개소로 산정)
 - 전문건설업체(하도급)는 설치·해체 비용 등의 노무비를 제외한 임대비 또는 재료비만 보조 가능
 - * 시스템 비계 및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공단이 정한 조건표에 따름)
 - 조건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2년 건설업 클린사업 게시 안내” 참고
 - *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공사금액별 공단 판단금액의 65%~50%까지 지원
 - 공사금액 3억 미만 65%, 3~20억 미만 60%, 20~50억 미만 50% 지원
- 설치기간
 -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투자완료(설치) 확인 요청 기한: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완료 후 공단에 확인요청
 - * 보조대상자의 연장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사업참여 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및 직접 방문 제출
- * 신청서 양식: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

0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 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 총 공사금액 :**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토목공사 외 건설공사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기술지도 대상 제외 사업장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법적 근거 및 현장

비치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 사업주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별지 제104호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월 2회 이상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경우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 안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사람이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또는 지연체결 시 처분사항

-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시 :**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미지급 또는 환수
-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시 :** 발주자가 조정된 기술지도 대가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미지급 또는 환수
-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제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 200만원, 2차 위반 : 250만원, 3차이상 위반 : 300만원

기술지도 내용

- 떨어짐, 맞음, 무너짐, 감전 등의 재해예방 및 위험기계·기구의 방호 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의 선택, 취급 및 착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기술지도 계약서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 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위탁 사업장명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칭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통합검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05

위험성평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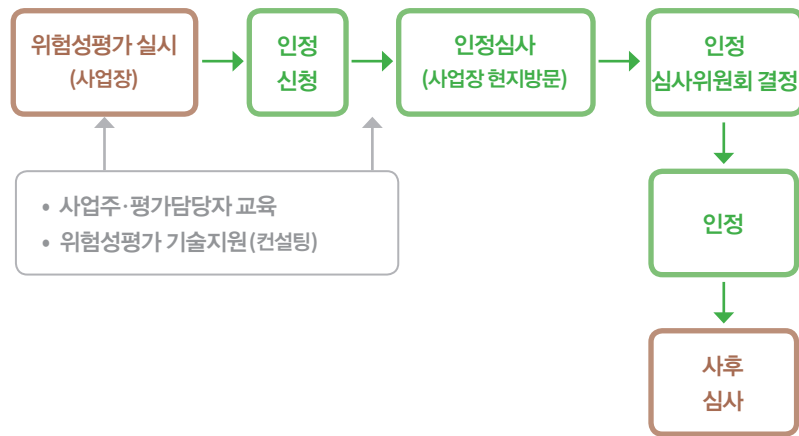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총 공사 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http://kras.kosha.or.kr>)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 * 컨설팅 지도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에 등록된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



-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재인정)신청서 및 「위험성평가」 관련 공단 교육·컨설팅 신청서는 「위험성평가」 홈페이지 (<http://kras.kosha.or.kr>) → 게시판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인정 []재인정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험성평가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소재지	[]		
소분류업종 (공사기간)	[. . ~ . .]	근로자 수 (총 공사금액)	[] 명 [] 억원
기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급사업장명단(사업장명, 대표자, 업종, 근로자수, 연락처 등) 등을 기재(별지로 첨부가능)		

우리 사업장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였으므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 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회원가입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아이디, 성명, 이메일,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 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 시 회원가입 및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험성평가」 [] 사업주교육
[] 평가담당자교육
[] 컨설팅(종합, 안전, 보건)

지원신청서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 *()는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기재	전화번호	
교육참석자 (업무담당자)	성명: *컨설팅 지원신청서는 업무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	전화번호	
소재지	[]	휴대폰번호	
소분류업종 (공사기간)	[. . . ~ . . .]	근로자 수 (총 공사금액)	[명 역원]

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 사업주교육 지원을 신청합니다.

[] 평가담당자교육

[] 컨설팅(종합, 안전, 보건)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 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회원가입 및 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아이디, 성명, 이메일,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회원 가입일로부터 회원 탈퇴 까지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 시 회원가입 및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06

직업건강분야 지원 사업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질식재해 발생 위험장소에 대한 인식 부족, 질식 재해 방지 조치 등이 미흡하여 재래형 재해인 산소결핍 및 일산화탄소 중독 등 질식재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질식재해예방 장비를 무상 대여,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밀폐공간작업 보유 사업장 질식재해예방 지원

밀폐공간 정의

-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하지 않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 결핍(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애 또는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 밀폐공간은 반드시 산소 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면서 환기가 불충분하여 유해가스, 불활성 기체가 존재하거나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목적

- 콘크리트 양생작업 현장, 맨홀, 정화조, 오(폐)수처리장 등의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재해 예방



1 콘크리트 양생장소



2 하수도 맨홀



3 오수처리장 정화조



4 폐수침전조



5 지하핏트

사업대상

- 콘크리트 양생작업 현장, 맨홀, 정화조, 오(폐)수처리장 등의 밀폐공간 보유사업장 (밀폐공간 작업장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별표 18에서 규정)

밀폐공간작업 보유 사업장 질식재해예방 지원

사업내용

- 맨홀, 상하수도, 정화조, 집수조, 오폐수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장소로 방문하여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 ① 무상지원 내용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현장교육(장비사용법, 환기실시법, 응급시 구조방법)
 - 질식재해 예방장비 무상대여(5일 대여 및 회수)
- ② 대여장비 종류
 - 가스농도 측정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환기팬: 외부공기를 밀폐공간 내부로 넣거나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
 - 송기마스크: 깨끗한 외부공기를 작업자에게 공급
- ③ 신청방법

대여신청 전화(1644-8595) → 신청사업장과 협의 후 사업장(현장)이 원하는 시간 장소로 방문 → 밀폐공간 내부 측정 → 장비 사용법 등 안전교육 실시 → 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환기팬 대여 → 사업장(현장)과 협의 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 후 회수

건설일용직 근로자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내용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 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 특수건강진단이란?
사업주가 건강진단 지정기관에서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비용지원 목적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업무상 질병 감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 배치전·특수건강진단 1, 2차 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지, 보수 작업에 종사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건설일용직 근로자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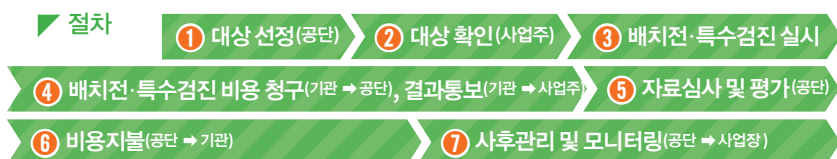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181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22
 - 벤젠, 톨루엔, 메탄올 등 유기화합물 109종
 - 구리, 납, 수은 등 금속류 20종
 -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 금속가공유 1종
 - 허가 대상 유해물질 12종
 -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석면분진 등 분진 7종
 - 소음, 진동 등 물리적 인자 8종 - 야간작업 2종

지원신청 및 대상확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또는 자주 찾는 항목 → 건강디딤돌 → 사업신청 → 건설 일용직 근로자
 - 신청 후 「신청 결과 확인」에서 대상여부확인

절차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운영

-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운영 목적은?
 -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분소)”의 설치·운영으로 근로자 질병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 센터(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센터(분소) 이용 시 가능한 서비스 내용은?
 - 근로자 건강(질병)상담실 운영(근로자 건강에 대한 모든 상담,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업무 적합성 평가 등)
 - 직업환경(작업관리) 상담실 운영 - 근골격계질환 예방실 운영
 - 뇌·심혈관질환 예방실 운영 - 심리상담실 운영



전액 무료



센터별 상이
탄력적 운영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운영

* 희망하는 사업장은 단체 예약시
이동건강상담 및 집단 상담 가능

- 센터(분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 전문가, 근골격계질환 전문가, 직무스트레스 상담 전문가 등 직업건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 어디에 가면 이용이 가능한가요?
전국 23개 센터 및 21개 분소 운영

센터(분소)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 (군포분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KT시화지점 3층 (군포분소)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www.gswhc.or.kr	031-364-7680 (031-8086-7195)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인천부평분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4층 (인천부평분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지하1층 116호	www.icwhc.or.kr	032-260-3661 (032-528-1155)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산분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광주광산분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103/104호	www.gjwhc.or.kr	062-713-5190 062-713-5199
대구 근로자건강센터 (서대구분소) (대구달성분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7층 (서대구분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21길 33 (대구달성분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www.dgwhc.or.kr	053-585-5501 (053-584-3406) (053-615-6497)
경남 근로자건강센터 (창원분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창원SK테크노파크 2동 11층 (창원분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122호	www.knwhc.or.kr	055-713-2400 (070-4270-0240)
서울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중구분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2층 (서울중구분소) 서울 중구 퇴계로 197 총무빌딩 302호	www.suwhc.or.kr	02-6947-5700 (02-2268-6497)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성남분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성남분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0 삼한하이팩스 A동 127호	www.gdwhc.or.kr	031-739-9301 (031-698-2990)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울산북구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울산북구분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www.uswhc.or.kr	052-201-9960 (052-288-7772)
부천 근로자건강센터 (김포양촌분소) (김포고촌분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관리동 3층 (김포양촌분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 메카존 나동 243호 (김포고촌분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욱로58번길 105-1유호빌딩 2층 204호	www.bcwhc.or.kr	032-329-9161 (031-999-7602) (031-998-9165)
충북 근로자건강센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양청송대길 10, 5층	www.cbwhc.or.kr	043-218-9415
충남 근로자건강센터 (아산분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YG빌딩 2층 (아산분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82 G-플레이스 405호	www.cnlhc.or.kr	041-522-8993 (041-547-7993)
대전 근로자건강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한신에스메카 1층)	www.tjwhc.or.kr	042-936-9571
부산 근로자건강센터 (양산분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벽산디지털밸리 1층 (양산분소) 경상남도 양산시 대평동3길 21층	www.bswhc.or.kr	051-329-7300 (055-385-7301)

센터(분소)명	소재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 (구미분소)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미근로자문화센터 1층 (구미분소)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비즈니스지원센터 213호	www.gbwhc.or.kr	054-475-2511 (054-465-2511)
경기남부 근로자건강센터 (평택분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피아빌딩 C동 2층 (평택분소)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산단로 58 청은상가 1층	www.gnwhc.or.kr	031-205-8960 (031-663-8953)
전남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YM빌딩 3층	www.jdwhc.or.kr	061-692-9640
전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63	www.jnswhc.or.kr	061-462-2900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성동분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A-1406호 (서울성동분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591 서울숲 A타워 308호	www.sgwhc.or.kr	02-2093-2650 (02-6077-7500)
경산 근로자건강센터 (영천분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근로자복지회관 2층 (영천분소) 경북 영천시 금원로 63 영천상공회의소 1층	www.gsswhc.or.kr	053-853-8579 (054-338-8541)
전주 근로자건강센터 (완주분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팔복지사 2층 (완주분소)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50-15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www.jjwhc.or.kr	063-211-9988 (063-262-7733)
강원 근로자건강센터 (춘천분소)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604호 (춘천분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공단길 24 퇴계농공단지	www.강원근로자 건강센터.kr	033-745-7289 (033-262-2788)
제주 근로자건강센터 (연동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연동분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9 제주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www.jejuwhc.or.kr	064-752-8961 (064-745-8961)
경기북부 근로자건강센터 (남양주분소)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검준공단지원센터 4층 (남양주분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산단로 70번길 6	www.ggbbwhc. or.kr	031-858-9030 (031-572-9032)



07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등) 발병위험이 있는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로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 ※ 지원불가 : 뇌혈관, 심혈관 이상으로 과거 뇌, 심장 수술(시술)을 받았거나 현재 치료 중인 자
- ※ 지원제외 : ① 사업주, ②상호출자 제한 등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공공단체에서 종사하는 자

- ①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자
 - 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② 공복혈당 126mg/dL 이상
 - ③ 총콜레스테롤≥240mg/dL 또는 LDL≥160mg/dL 또는 중성지방≥200mg/dL
 - ④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③ 일반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 이상인 자
- ④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 ⑤ 만 55세 이상

검사 항목 및 지원금액

- 아래 검사항목에 대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합니다.

• 기본검사 : 자부담금 42,600원(뇌·심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필수 검사항목으로 구성)

구분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검사 항목	① 문진 및 의사상담	① 신체계측 (키, 몸무게, 허리둘레) ② 혈압	① 공복혈당	① 요단백	① 경동맥 초음파
	②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		② 당화혈색 (HbA1c)		
			③ 총콜레스테롤		③ 심전도
			④ HDL콜레스테롤		
			⑤ 트리글리 세라이드		
			⑥ LDL콜레스테롤		
			⑦ 혈청 크레아티닌		
			⑧ 신사구체여과율 (e-GFR)		
			⑨ 호모시스테인		

※ 상기 검사항목의 건강진단비용은 213,000원으로 지원금 170,400원(80%)은 공단이 부담

• 선택검사 : 신청자 중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시 정밀검사 추가 가능 <희망자에 한함>

(지원조건) ① 만55세 이상, ② 총콜레스테롤≥310mg/dL, ③ 혈압≥180/110mmHg, ④ 당뇨(공복혈당≥126mg/dL 또는 당화혈색소≥6.5%), 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고위험 이상, ⑥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발병위험도 5% 이상

(자부담금) ① 심장초음파 2.5만원, ② 관상동맥 조영CT(기본검사 비조영CT 대체) 2.5만원, ③ 뇌혈관MRA 4만원

※ 선택검사를 희망하시는 경우, 해당 검사항목이 가능한 검진기관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바랍니다.

- 비용지불 : 신청인은 자기부담금 20%만 건강진단 당일에 해당기관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사후관리

건강상담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10회 (주기 1개월 이상)

-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는 건강진단기관을 방문하여 주기적으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자부담금 없으며, 건강상담 이외에 질병치료, 처방 등을 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

추가검사 정밀검사 비용의 80%

- 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의심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경우

신청방법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메인화면

- ① **(바로가기)** 자주 찾는 메뉴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또는
- ② **(신청경로)** 「사업소개-재정지원-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 신청자: 사업주(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첨부) 또는 노동자(SMS 본인인증) 모두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FAX 송부(052-702-9507) 또는 건강진단기관에 제출

※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사이트)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심층건강진단 실시기관

<’22.2.10.기준>

지역	검진기관명	연락처	지역	검진기관명	연락처
서울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02-2038-6115	전북	(사)한국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0	063-259-8800
서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02-2140-6010	전북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 3길 13	063-259-8800
서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78	02-3290-9800	제주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제주시 연북로 111	064-740-0237
서울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35	02-2600-2005	제주	의료법인 해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제주시 서광로 193	064-750-0000
서울	서울DMC건강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	070-5138-5532	대전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11	042-530-2100
서울	독일하트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92	02-334-1008-9	충북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31	043-299-5746
서울	재단법인 미래의료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3	02-540-0001	대구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23	053-341-9010
서울	한국의학연구소(KMI) 본원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02-3702-9000	대구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장동로 16	053-757-0500
서울	한국의학연구소(KMI) 여의도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02-368-8114	대구	한국의학연구소(KMI) 대구 검진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611	053-430-5000
서울	한국의학연구소(KMI) 강남 검진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1	02-3496-3300	경북	구미강동병원 구미시 인동20길 46	054-478-9591
경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57	031-250-5800	경북	(의)안동병원 안동시 양실로 11	054-840-1656
경기	한국의학연구소(KMI) 수원 검진센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031-231-0114	부산	동아대학교의료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051-240-5310
경기	의료법인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98	031-8021-6947	부산	이샘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12	051-631-5225
경기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070-5083-1819	부산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051-419-7757
인천	나은병원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28번길 43	1661-0099	부산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051-610-9993
인천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861	부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45	051-553-9701
인천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0	032-890-8700	부산	부산미래IFC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051-710-2000
인천	현대유비스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3	032-890-5713	부산	한국의학연구소(KMI) 부산 검진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051-810-1500
강원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지부 춘천시 남춘로 50	033-260-0800	울산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60	052-296-5671
강원	속초보광병원 속초시 중앙로 11	033-639-8904	경남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김해시 분성로 94-8	055-330-6087
광주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32	062-610-3147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280
광주	한국의학연구소(KMI) 광주 검진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062-602-2100	경남	(사)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07	055-259-0100
전남	여수중앙병원 여수시 둔덕2길 6-3	061-644-9000			

※ 건강진단기관은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신청사이트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08

계절별 기후변화 취약근로자 건강보호

옥내·외 계절별 기후변화(미세먼지, 폭염,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에 근로자 보호 기본수칙 이행지도 및 예방용품 지원을 위하여 계절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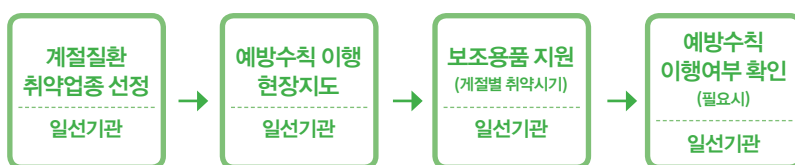
사업목표

- 대상 : 기후변화 취약근로자 보유사업장*
* 건설현장, 환경미화업 등 옥내·외 작업 사업장
- 사업물량 : 2,500회
- 옥외노동자 마스크 지원 : 285만개

추진내용

- 여름·겨울철 기후대응 계절질환 예방조치 자율이행 지도
- 폭염(6월~9월), 한파(11월~2월)기간 계절질환 3대 예방수칙 준수 확인
※ 폭염대응 예방설비(이동식에어컨, 그늘막) 보조지원사업 연계
- 사업장·근로자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옥외·옥내 작업장 폭염 예방 가이드 및 특보상황 전파
- 기후대응 취약시기* 보조용품 지원 및 집중 지도
- 계절별 보조용품(Cool-Warm-Kit) 제작하여 취약시기 집중배포
* 여름(7월 중순~8월), 겨울(12월 중순~1월)
- 미세먼지 노출 옥외노동자 미세먼지 대응 마스크 배포
-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 및 올바른 마스크 착용 지도
※ 공단사업과 민간기관 마스크 배포용역사업 등을 통해 배포

추진절차



09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대형산업사고,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성폭행 등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노동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간접 사고 피해자의 심리 안정화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 일상·직장 생활 복귀 도모 • 사고 충격에 따른 심리안정 지속 관리 • 필요 시 전문적인 치료 연계
일하는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운영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별 상이(탄력적 운영)
이용 가능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3개 센터 운영

센터명	소재지	담당지역	전화번호
인천직업트라우마센터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인천근로자건강센터 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북부)	032-818-3660
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부천직업트라우마센터 내)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고양시, 서울특별시(남부)	032-329-9565
경기서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 내)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031-364-7603
경기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내)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평창군 등 남부지역	031-739-9301
대전직업트라우마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대전근로자건강센터 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역	042-936-9573
대구직업트라우마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대구근로자건강센터 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역	070-8827-4853
광주직업트라우마센터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133-8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역	062-713-5185
경남직업트라우마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경남근로자건강센터 내)	경상남도 전역	055-713-2401
경기북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내)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등 북부지역	070-4139-2607
울산직업트라우마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울산근로자건강센터 내)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052-201-9963
전주직업트라우마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전주근로자건강센터 내)	전라북도 전역	063-211-9988
제주직업트라우마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제주근로자건강센터 내)	제주도 전역	064-752-8961
충남직업트라우마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35 (충남근로자건강센터 내)	충청남도 전역	041-566-8993

10

패트롤 현장점검

사고사망 발생 위험현장·작업·기계설비에 대한 상시순찰 및 불시점검 (Patrol)을 통하여 불량현장은 반드시 개선시킨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사고 사망 감소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 ※ 지방관서, 안전보안관,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요청받은 위험현장의 경우 50억 이상도 패트롤 현장점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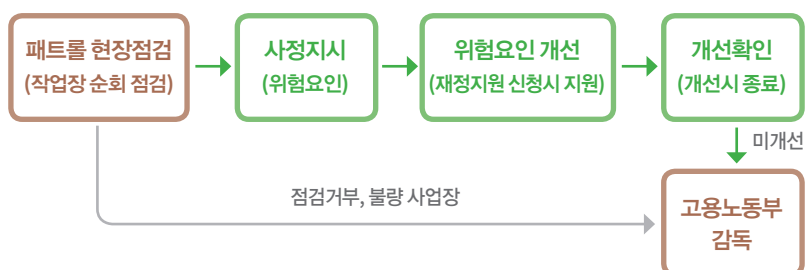
사망사고 핵심 점검사항 (추락)

- | | |
|-----|--|
| 추락 | ① 작업발판·안전난간·방망·개구부덮개 설치
②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 설치 |
| 보호구 |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안전화 지급, 착용 및 상시관리 |

점검 기간

- 연중 실시
 - ※ 점검거부 또는 미개선 등 불량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독 실시

점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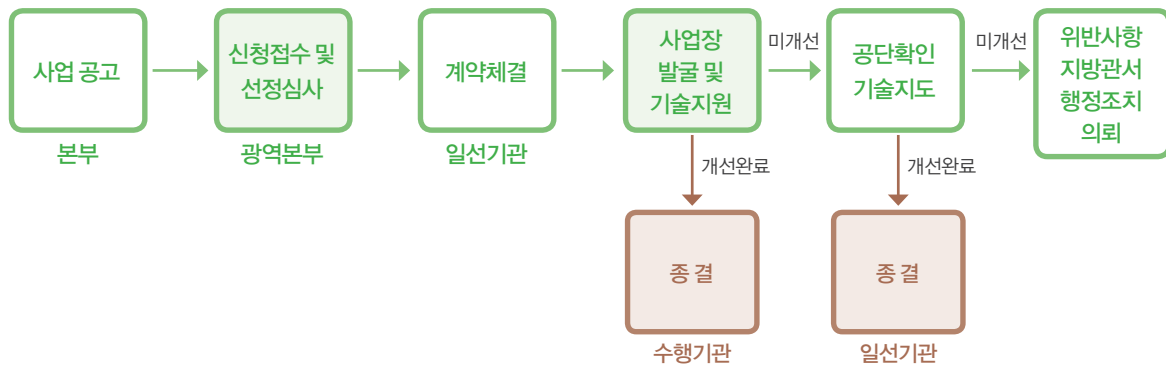
11

사고성재해 집중관리(위탁)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재해예방전문 기관을 통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건설현장 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사업추진 절차



지원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산재미가입 현장 포함) 등

기술지원 내용

- 건설작업 현장방문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작업 상황 관찰을 통해 향후 작업 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기술지원
- 사고사망 예방 핵심 메시지 전파 및 실천 안전수칙, 추락 등 건설업종 주요 사고사망요인 개선 기술지원
-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
- 사고사망 및 건강장해예방, 산업안전보건제도 안내 등 자료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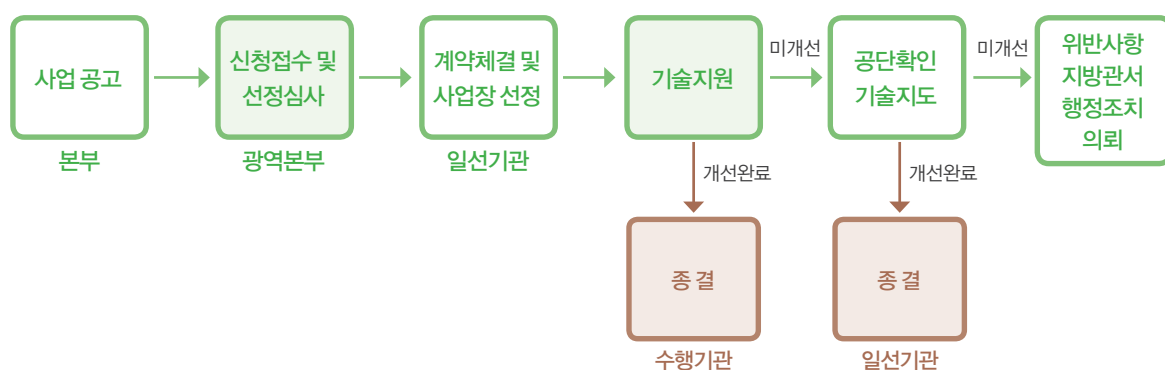
12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위탁)

보건관리자선임의무가 없는 등 자율보건관리역량이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 기술지원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등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상질병 및 질병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사업추진 절차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공사금액 1~800억 건설업 포함)

기술지원 내용

- 사업장 특성 및 핵심 위험요인에 따라 테마별* 기술지원 실시
 - * ① 작업환경관리 - 화학물질 중독예방, 폭염, 국소배기장치 관리 등
 - ② 작업관리 - 질식재해예방, 근골예방
 - ③ 직업건강관리 - 감정노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기본요소 안내 및 지원
- 재해발생 취약요인 및 보건관리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방안 제시
- 사업장 내 발생 재해 원인분석 및 대책 제시
- 현장 맞춤형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및 건강증진 자료 보급 등